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합52435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원일, 박동열]

피고1. D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올 [담당변호사 김경희, 원지영]

변론 종결2023. 3. 16.

판결 선고2023. 6. 22.

주 문

1.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1) 원고 주식회사 B에 346,623,200원 및 그중 315,112,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31,511,200원에 대하여 2022. 1. 17.부터, 각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C에 56,315,600원 및 그중 51,196,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5,119,6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1.부터, 각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F은,

1) 원고 주식회사 B에 26,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주식회사 C에 2,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389,7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7.부터 2022.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 E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가,

나.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F이,

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1. 주위적으로,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373,511,200원 및 그중 342,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31,511,200원에 대하여 2022. 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C에 59,119,600원 및 그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5,119,6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의 가, 나와 같은 판결1)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389,7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고 한다)는 각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사단법인 G(이하 'G'라고 한다)가 원고 회사들의 주식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G의 대표이사인 H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각 태양광발전소 또는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위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이다(이하 원고들과 G 및 소속 직원 등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측'이라고 하고, 피고들 및 소속 직원 등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 측'이라고 한다).

나. 충북 단양군 I리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B, C는 2021. 12. 30. 피고 E와 충북 단양군 I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단양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E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위 원고들에게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의 1 등, 이하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F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들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2 등, 이하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 이라 하고,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과 합하여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이라고 한다).

2) 단양 관련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치부지2) 등

J(갑 제3호증의 1, 2)	충북 단양군 K 전 1,775m ² 20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원고 B
L(갑 제4호증의 1, 2)	충북 단양군 M 전 2,340m ² 30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N(갑 제5호증의 1, 2)	충북 단양군 O, P 전 1,344m ² 18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원고 C
Q(갑 제6호증의 1, 2)	충북 단양군 R 전 1,823m ² 22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S(갑 제7호증의 1, 2)	충북 단양군 R 전 2,316m ² 30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T(갑 제8호증의 1)	충북 단양군 U, V 전 6,921m ² 1,000Kw 미만 급 1기 설치(토목공사 포함)	원고 B

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J	338,520,000	21,480,000
L	504,600,000	35,400,000
N	301,600,000	22,400,000
Q	373,920,000	22,080,000
S	511,960,000	28,040,000
T	1,632,480,000	167,520,000
합계	3,663,080,000	296,920,000

□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 계약금 (10%)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 1차 중도금 (10%)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후 7일 이내
- 2차 중도금 (70%) : 모든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서류를 제출하여 매수인의 승인을 득했을 경우 7일 이내
- 잔금 (10%): 사용 전 검사 후 7일 이내
- 설치부지 매매대금
- 계약금 (10%): 계약시
- 잔금(90%):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과 별도로 토지 이전시 지급한다.

다) 기타 계약상 주요조항("갑"은 매수인인 원고 B 또는 원고 C이고, "을"은 수급인 피고 E 또는 부지매도인 피고 F을 의미한다)

□ 단양 관련 각 설치계약

제3조(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앞서 본 '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와 같은 취지이다.

제9조(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때 "갑"의 계약불이행은 토지계약금과 발전소설치 계약금 포기로 하며, "을"의 계약불이행은 "갑"에게 토지 계약대금과 발전소설치 계약금, 그 당시까지 입금한 중도금을 반환기로 한다.
4. "을"의 귀책사유 시 "갑"에게 사전 통보 후 협의하고 계약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등 해당사업 법령변경과 관할청의 인허가 지연 및 설계변경과 민원으로 인한 손해와 기간연장은 상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금융)

2. 준공 전시설대출금에 대하여 "갑"이 신청하고 기성에 맞게 "을"이 직접 수령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3. 금융(PF), 보증서 발급의 수수료는 "갑"이 부담하며 대출금에 포함한다.

특약사항

1. 본 특약은 표준계약서상의 내용에 우선하고 해석되고 적용된다. 이에 표준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과 충돌할 경우, 본 특약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표준계약서 제3조의 발전소 설치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금융용 계약서(용자를 최대한 실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표준계약서 제3조(설치대금) 일정표 참조

※ 단, 선급금을 제외한 모든 대금은 지급 시기별로 기성 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기관의 PF일정 및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단,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접수 후 실제 인허가가 불허가될 경우, 불허가 처분 확인 후 7일 이내 '을'은 '갑'이 지급한 선급금과 중도금(1차)을 100% 반환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반환금을 받은 즉시 해당 토지 매입 건을 취소하기로 한다.

3. 표준계약서 제6조의 3항, 6항, 7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6항 : 설계도상 종·횡단상 구배는 현장상황과 발전용량에 맞게 '을'이 결정하되, 해당 내용을 반드시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구배로 인한 토목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7항 : 설계도서 작성 및 설계변경도서 작성과 관련, 사전에 도출되는 모든 착공서류는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기로 한다.

<착공서류의 목록>

- 인허가 서류, 설계도면(토목도면, 구조물 도면, 전기도면 모두 포함), 시방서, 공정예정표, 설계내역서, 견적서

6. 표준계약서 제11조 4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4항 : 금융, REC 장기계약은 '갑'과 '을'이 협조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서 이외에 금융기관의 용자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PF완료 및 준공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본 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8.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책정하고 '계약이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9.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의 의무>

-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서류 및 업무지원
-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협의 및 관리 업무
- 본 공사와 관련한 금융 업무 진행 및 계약금의 지급
-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별도 비용의 납부(취득세, 제세공과금 등)

<'을'의 의무>

- 불가항력 사항을 제외하고 준공예정일까지 조건 없는 준공(책임준공)(후략)
-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법규에 의한 행정 자료에 대한 신고와 취득(발전사업, 개발행위, 사업개시신고 등)
-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 및 설치공사의 수행(본 공사)
- 공사수행을 위한 사전 서류 준비와 도급자와의 협의, 최종 승인 문서의 제출, 준공 이후 발전개시, 설비확인 등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관련 업무의 지원 등
- 발전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업무
-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를 포함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직원에 대한 안전에 관한 일체의 사항
- 본 공사와 관련한 민원의 해결
- 토지 매입 후 사업주 명의 등기 진행을 위한 협조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통상적으로 '을'이 진행해야 하는 기타 사항

□ 단양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

1. 부동산의 표지

앞서 본 '가) 설치부지 등'에 기재된 설치부지와 같은 취지이다.

2. 계약의 내용

제1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앞서 본 '나)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와 같은 취지이다]

3. 특약사항

2. 태양광발전소 설치목적의 매매이다.

3. 발전소 설치공사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한다.

4. 토지의 면적은 최종 증감할 수 있다. 면적 확정은 "을"이 결정하고 발전용량 변경없는 면적조정은 토지비와 설치비의 합계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

5. 토지 잔금은 태양광 설치대금과 별도로 토지 이전시 지급함.

3) 원고 B, C는 2021. 12. 30.부터 2022. 1. 21.까지 피고 E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각 지급하였다.

원고 B	2021. 12. 30.	36,000,000	J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54,000,000	L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39,600,000	N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32,400,000	Q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180,000,000	T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2021. 1. 17.	3,385,200	J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5,046,000	L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3,016,000	N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3,739,200	Q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16,324,800	T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원고 C	2021. 12. 30.	54,000,000	S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원고 B	2021. 12. 30.	36,000,000	J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중 10% 및 설치부지 매매대금 중 10%
2022. 1. 21.	5,119,600	S 관련 태양광발전소 설치대금 중 계약금 부분 10% 상당의 부가가치세	

다. 춘천시 W리 일대 태양광발전소 양도 관련 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춘천시 W리 일대에서 2,005kW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춘천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D와 피고 E는 2022. 1. 28.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D, E와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계약(갑 제9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A, "을"은 피고 D, "병"은 피고 E이다).

제2조(계약 주체의 의무)

1. 갑 : 양도양수 대금의 지불
2. 을 : 양도양수 대상에 대한 책임있는 양도이행
3. 병 : "을"의 의무에 대한 연대 보증

제3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발전소 부지

(중략)

6.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을"의 주식

<태양광발전소> 발전소명 : X 태양광발전소, 용량 : 2,005kw급

<설치부지> 춘천시 Y, Z, AA, AB, AC, AD, AE, AF, AG, 14,156m²

제4조(양도양수대금)3)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대금은 총 3,897,5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 "갑"은 태양광발전소 양수를 위해 "을"에게 다음과 같이 시간 및 토지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10%)	297,588,000	29,758,800	62,412,000	389,758,8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1차 중도금(10%)	297,588,000	29,758,800	62,412,000	389,758,800	모든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 (후략)
2차 중도금(70%)	2,083,116,000	208,311,600	436,884,000	2,728,311,600	'을'이 발전소를 준공하여(후략)
잔금(10%)	297,588,000	29,758,800	62,412,000	389,758,800	(생략)
총계	2,975,880,000	297,588,000	624,120,000	3,897,588,000	

제5조(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총 양도양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책정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규정과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책임에 의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을"은 해지 시점 전까지 "갑"에게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해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환불하기로 한다.

제8조(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부속 계약과 특약의 내용에 따른다. 내용적인 우선순위는 본 계약서, 특약서(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서 특약서), 표준계약(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서 / AH 순으로 한다. 이 외 본 계약의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관례 및 관련법규에 따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처리하기로 한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약서 특약서

2.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특약사항 2.와 같은 취지

7.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특약사항 9.와 같은 취지

2) 원고 A는 2022. 1. 28. 피고 D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계약금 389,758,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의 각 계약이행과 관련한 원고의 항의 등

1) 피고 D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일은 2022. 1. 28.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도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책정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원고 A에 제공하지 못하였다.

2) G의 직원 AI은 2022. 2. 15. 피고 E의 부사장 AJ에게 「① 단양 사업과 관련한 ⑦ 사업계획서, ④ 구적도, ④ 모든 인허가 제출서류, ② 춘천 사업과 관련한 ⑦ 피고 D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확인서, ④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③ 태양광 시공 금융처리를 위한 이사회 위탁 회계기관의 요청 자료, ③ 기타 금융 검토를 위해 시공사 신용평가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시공실적, 정관, 등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였다.

3)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AJ은 2022. 2. 18. AI에게 「① 단양 사업과 관련한 ㉠ 발전소별 사업계약서, ㉡ 발전소별 단선 결선도 자료, ㉢ C 계약서 - 변경 관련 자료 ② 춘천 사업과 관련한 ㉣ 피고 D 주식 질권설정 확인서, ㉤ D 세금계산서 자료」만을 제공하였다.

4) G는 2022. 2. 23. 피고 E와 춘천 사업 및 단양 사업에 관하여 회의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

□ 참석자 : 피고 E의 AK 대표, AJ 부사장 / GH 대표, AI 실장

□ 주요 논의 안건 및 결과

1) 춘천 사업

[논의사항] 이 사건 양도양수도계약 제5조에4) 명시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건

[논의결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로 인해 계약해지 확정

- 단 피고 E가 2022. 3. 10.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사업재개 하도록 G 이사회 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의견주기로 함.

2) 단양 사업

[논의사항] 피고 E의 의무사항인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건과 관련, 금융기관 필수 제출서류인 시공사측의 '계약이행보증 등'의 서류 제출 불가로 인한 계약해지 건

[논의결과]

- 금융과 관련하여 피고 E 측에서 제출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G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해당예산에 맞게 발전소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함.
- 이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재체결하여 추진, 이에 따라 피고 E에서 춘천 사업 및 단양사업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을 신규사업(변경 사업)의 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좋겠다고 하여 G 이사회 투자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의견주기로 함.
- 신규 계약 건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G에서 2022. 3. 2.까지 피고 E에 계획안을 송부한 후 협의하기로 함.

5) 피고 E의 채권자 AL는 이 법원 2021가단5054374 손해배상(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2022. 2. 22. 이 법원 2022타채104877호로 피고 E의 G에 대한 단양 사업 관련 공사 또는 설치대금 및 유지보수비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30,655,903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2. 2. 25. 제3채무자인 G에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6) AI은 2022. 2. 28. AJ에게 「G의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① 춘천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단양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2. 2. 25. 송달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는 것도 어렵게 되었으므로, 피고 E에서 매각가능한 발전소 목록을 정해 매각제안을 주면 내부 논의를 진행해볼 계획이며, 이 방식만이 그나마 단양 사업을 상계처리(새로운 발전소 인수대금과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 등에 따라 지급한 돈에 관한 반환채권 사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듯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7) AJ은 2022. 3. 2. AI에게 「단양에 500kw급 발전소 2022. 12.까지 완공하여 9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 측에서 인수하고,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을 통합하여 위 대금과 상계하고, 발전소 완공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되, 완공시까지 피고 E 소유의 천안 AM 751.68kW급 발전소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는 내용의 이메일 회신을 하였다.

8) AI은 2022. 3. 10. AJ에게 '사업계획서 수립시 참고사항'이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귀사가 요청한 대로 기지급한 비용에 대한 상계처리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2022. 3. 15.까지 제출해주시고, 이를 보고 본사가 채권을 상환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계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9) 피고 E의 직원 AN은 2022. 3. 15. A에게 사업계획서를 보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 태양광발전소 500kW 설치 납품 계획

3. 선수금 입금액 : 822,389,600원

4. 선수금 보증계획 : 선 지급금에 대해 공사완료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피고 E에서 통합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제출자 : 피고 E, D

원고 B, C, A 귀중

10) 피고 E, D 그리고 AO는 2022. 3. 2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진행 조건 및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 보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방법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납품할 경우, 충북 단양군 M, K, O, P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3개 법인이 지정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 경우 설정비는 피고 E, D가 부담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방법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납품할 경우, 변제금은 기존 계약과 같이 kW당 180만 원으로 하되, 최종 납품 발전소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가감액은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후략)

5. 기존계약에 의거 원고 A가 설정한 피고 D의 주식은 유지하되,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담보물을 제시한다.

6. 3개 법인과 의 기존계약(단양, 춘천) 해지시,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해지 당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총 66,389,600원을 3개 법인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7. 금전소비대차계약상에 AO 대표가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11) 이후,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원고 B, C는 2022. 3. 30.경 피고 E에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31.까지 기지급금을 반환하라.」라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 A도 같은 날 「이행보증보험증권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31.까지 기지급금을 반환하라.」라는 공문을 보냈다.

12)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22. 3. 31.경 다시 그 다음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2022. 4. 1. 피고 측에서 금일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B, C는 다시 2022. 4. 5. 피고 E에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구두 및 메일 등으로 협의하고 동의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진행 조건 및 내용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도 불이행하였으므로 기지급대금을 2022. 4. 7.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원고 A도 같은 날 피고 D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구두 및 메일 등으로 협의하고 동의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진행 조건 및 내용에 관한 동의서의 내용도 불이행하였으며, 2022. 3. 30.경 보낸 공문의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지급대금을 2022. 4. 7.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은 2022. 4. 6.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 C의 청구 가) 주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 :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상 원상회복 청구

(가) 피고 E는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특약사항 3.과 9.에 따라 인허가 관련 서류 및 금융기관 요구자료들을 원고 B, C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위 원고들은 2022. 4. 5. 해제를 통지하는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E에 도달하였으므로 단양 사업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위와 같은 해제로 인해 피고 E는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 B에 단양 사업 각 계약에 따른 계약금들 및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의 합계인 373,511,200원 및 그중 3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0.부터, 나머지 31,511,2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7.부터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C에 59,119,600원 및 그중 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0.부터, 나머지 31,511,2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7.부터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 민법 제110조 사기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5) 피고들은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B, C를 기망하여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2022. 9. 20.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B, C에 주위적 주장과 같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B, C로부터 피고 E가 수령한 돈 중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피고 F이 수령하였다면, 피고 F은 위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 B, C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 B에 26,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C에 2,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A의 청구 피고 D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 A가 2022. 4. 5. 통지하는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보내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D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E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6조6)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A에 389,7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B, C의 청구 관련 가) 주위적 주장 관련

(1)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특약사항 9.의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원고 B, C에 대한 제출의무가 아니라 위 원고들과 피고 E 그리고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피고 E가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피고 E는 위 원고들에 대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의무'가 없고, 금융기관에 대한 위 의무는 위 원고들의 해제통보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E의 채무불이행은 없다. 더구나,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지나지 않아 피고 E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또한, 단양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의 미제출은 그동안 원고가 해제사유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피고 측은 인허가 서류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나머지 서류는 원고가 보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 E에 이와 관련한 채무불이행도 없다.

(3)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22. 2. 23. 춘천 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거나 일부 변경하기로 하여, 보증보험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와 예산을 축소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되 단양 사업과 춘천 사업 관련하여 기지급한 돈을 신규계약의 계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2022. 2. 23. 이후에는 이전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 관련

피고 E는 2021 ~ 2022년도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고, 2017년 55억 원, 2018년 100억 원, 2019년 66억 원, 2020년 46억 원, 2021년 52억 원의 공사실적이 있는 등,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 당시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2) 원고 A의 청구 관련 위 (3)에서 본 것처럼, 춘천 사업 관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신규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2022. 2. 23. 이후에는 원고 A도 이전에 피고 측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 판단

1) 주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증인 AI, A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양 사업관련 각 설치계약 특약사항 9.에서 피고 E의

의무로 정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원고 B, C가 단양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 중 피고 E의 도움이 필요한 서류들을 위 원고들에게 작성·제출해야 하는 의무'로서 위 원고들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요청하면 피고 E는 그때까지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주된 채무로서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특약사항 9.에서 정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서류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약사항 9.에서 피고 E의 의무로 특별히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규정하고, 원고 B, C의 의무로 '본 공사와 관련한 금융 업무 진행 및 계약금의 지급'을 규정한 점, 위 특약사항 2.에서 대금지급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기관의 PF일정 및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위 특약사항 6.에서 '금융, REC 장기계약은 갑과 을이 협조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서 이외에 금융기관의 융자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PF완료 및 준공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본 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AI이 「원고 측이 계약금 10%, 중도금 10% 총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지급한다고 피고 측에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PF)을 통해 피고 E에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이러한 전제 하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특약사항 9.에서 정한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원고 B, C가 단양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 중 피고 E의 도움이 필요한 서류들을 위 원고들에게 작성·제출해야 하는 의무」로 해석되고, 이는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주된 채무라고 할 것이다.

② 위 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그 구체적인 서류의 내용 및 이행기를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AI이 2022. 2. 15. AJ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요청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고 있어서, 금융기관 요청사항에 맞게 편집이 필요함」, 「태양광 금융검토를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 외 추가 자료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라는 등의 기재를 한 점, AI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수서류」라고 증언한 점, AJ도 2022. 2. 15.자 이메일과 관련하여 「AI이 은행에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요청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회의록에 단양 사업에 관한 논의사항으로 「피고 E의 의무사항인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건과 관련, 금융기관 필수 제출서류인 시공사 측의 '계약이행보증 등'의 서류 제출 불가로 인한 계약해지 건」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2022. 2. 15. 피고 측에 요청하였던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인허가 서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피고 E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원고들에게 단양 사업 각 계약의 대금 지급의무와 금융업무 진행의무가 있는 이상 이러한 채무이행에 필요한 피고 E의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원고들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요청하면 그때까지 작성 및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 측 AI은 2022. 2. 15. 피고 측 AJ에게8) ① 단양 사업과 관련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 모든 인허가 제출서류, ② 춘천 사업과 관련한 ㉣ 피고 D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확인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태양광 시공 금융처리를 위한 이사회 위탁 회계기관의 요청 자료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AJ은 2022. 2. 18. AI에게 ① 단양 사업과 관련한 ㉦ 발전소별 사업계약서, ㉧ 발전소별 단선 결선도 자료, ㉨ C 계약서 - 변경 관련 자료 ② 춘천 사업과 관련한 ㉩ 피고 D 주식 질권설정 확인서, ㉪ D 세금계산서 자료만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측은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 기한연장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피고들의 2022. 7. 8.자 준비서면 4면 참조). 그리고 이 사건 회의록에는 앞서 본 단양 사업에 관한 논의사항에 관하여 「금융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제출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G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해당 예산에 맞게 발전소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함. 이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재체결하여 추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2022. 2. 23. 회의 당시에는 피고 측도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을 전제로 신규사업과 기지급금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2022. 2. 23.경 피고 E의 위 특약사항 9. '금융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신규사업과 기지급금 처리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본다),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적으로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은 2022. 4. 6.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해제되었다.

(5) 그렇다면 피고 E는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 B에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상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액인 346,623,200원 및 그중 315,112,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31,511,200원에 대하여 2022. 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원고 C에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상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액인 56,315,600원 및 그중 51,196,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나머지 5,119,6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9) 한편, 위 원고들은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여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도 피고 E에 지급을 구하나,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의 각 계약서(갑 제3 내지 8호증)상 당사자(매도인)는 피고 F이므로 위 원고들이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피고 E에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E가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위 원고들이 지급한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상 계약금 상당액이 피고 E에 귀속되어 피고 E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10)나) 해제권 불행사 합의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지원인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해지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미 발생한 계약해지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에 더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의록에 「금융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제출 불가능하다는 서류가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G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해당예산에 맞게 발전소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계약을 재체결 한다」는 내용도 있는 점, 특히 중요한 기지급한 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측에서 기존에 춘천과 단양 사업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822,389,600원은 신규사업의 계약금으로 상계처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원고 측은 그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추후 통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원고 측이 2022. 2. 28. 피고 측에 「단양 사업과 관련하여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측도 2022. 3. 2.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답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2022. 2. 23. 회의 당시 앞서 본 피고 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더 이상 해제주장을 하지 못하고 기지급한 돈을 신규계약에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2022. 2. 23. 원고 측이 더 이상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신규계약이 체결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라고 판단되는데,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측과 피고 측은 1달 이상 협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022. 4. 1.경까지 기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제공 방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이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대체하는 신규체결을 체결하지 못한 채, 원고 측에서 2022. 4. 5. 피고 측에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 위와 같은 조건부 합의는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 F이 피고 D, E의 대표이사인 점,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목적의 매매이다.'라고 기재한 점,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 제4조 제1항에도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된 본 토지 매매계약은 원고 측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은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과 결합된 계약으로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해제로서 함께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상 계약금을 피고 E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 E가 피고 F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 F은 원고 B에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상 계약금 26,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이 사건 소송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원고 C에 단양 사업 관련 각 부지매매계약상 계약금 2,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이 사건 소송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의무는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그 특약서 2.와 7.은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특약사항 2.와 9.과 같은 취지인 등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나 그 특약서의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단양 사업 관련 각 설치계약의 내용과 사실상 같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PF)을 통해 피고 D에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원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였던 서류이고(적어도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회의록에도 필요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본 건은 계약해지로 확정, 단, 피고 E에서 2022. 3. 10.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면 사업재개를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D에서 2022. 3. 10.까지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또한 해제를 통지하였는바, 2022. 4. 6.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해제되었다.

3) 다만, 피고 D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E가 반환해야 하는 돈의 지연손해금에 있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6조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규정과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책임에 의한 해지가 발생할 경우, "을"은 해지 시점 전까지 "갑"에게 지급받은 모든 대금을 해지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환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 4. 17.부터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금액 원금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위 피고들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별도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용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4) 그렇다면,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 A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계인 389,7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 A의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2022. 2. 23. 이후 더 이상 원고 A가 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오히려 증인 A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E의 부사장 AJ 역시 춘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A와 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안성민

판사박진옥

- 1)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금액만 감축한 것에 불과하나 위 원고들의 청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고들이 기재한대로 본다.
- 2) 설치부지는 해당 지번들의 면적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제3조"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조항도 같다.
- 4) 제4조라고 되어 있으나 제5조를 의미한다.
- 5) 원고 B, C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설행한다. 또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춘천 사업 관련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목을 명확히 '(예비적) 청구원인- 사기를 원인으로 한 단양 사업 관련 계약의 취소'라고 기재하고, 결론에서도 원고 A에 대한 언급없이 "원고 B, 원고 C는 이번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사기를 이유로 피고 E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들을 취소합니다(민법 제110조)."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A가 예비적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6) 원고들은 소장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0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 7) 피고들의 2023. 6. 12.자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은 피고들의 주장을 보충·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살펴본다.
- 8) 단양 사업 관련 각 계약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들이나, G와 피고 E에서

위 계약들과 관련한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9) 한편, 이 사건 각 내용증명에서는 원고들이 2022. 4. 7.까지 입금된 선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각 내용증명의 내용에 비추어 위 지급기한까지 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민법 제548조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을 인정한다.

10) 원고 B, C의 주위적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주장인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